퇴직금규정 시행세칙

제 정 2007. 1. 31 개 정(1) 2014. 3. 3 개 정(2) 2018. 12. 13 개 정(3) 2019. 10. 23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퇴직금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변경자의 퇴직금) 자격변경된 자의 퇴직금은 자격변경전후의 근속년수 를 통산하여 자격변경후의 기준으로 계산한다.

제3조(월평균임금의 산정) 규정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1호의 평균임금과 규정 제10조(퇴직금 최저지급액)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최저 지급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의 월평균임금의 산정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①기준급 :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액 × 1/3

②시간외근무수당: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액 × 1/3

③업적급: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액 × 1/12 ④연차수당: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액 × 1/12 ⑤ 직책수당: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액 × 1/3

제4조(월평균임금의 산정 예외) ①제3조의 월평균임금 산정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아닌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,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월평균임금을 산정한다.

②제1항에 의해 산정된 월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월평균임금으로 한다.

제5조(특별퇴직금 신청 및 심사) ①규정 제8조의 특별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퇴직일 이전에 특별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특별퇴직금 지급을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는 심사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년 1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직원에 대한 근속기간 산정은 중간정산한 기간의 최종일 익일부터 기산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10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